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
[ ]휴업
제대혈은행 [ ]폐업 신고서
[ ]재개업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제대혈은행	허가번호		개설일	
	명칭	[ ] 제대혈은행		
	소재지	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	폐업일			
	재개업일			
휴업·폐업 사유				

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	수수료
	1. 기증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(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보관 중인 제대혈,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조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(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없음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